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COPYRIGHT GUIDE BOOK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COPYRIGHT GUIDE BOOK

CONTENTS

SECTION 01

개요

01	글자체(폰트 도안)와 글꼴(폰트) 파일의 차이	06
02	글꼴(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와 올바른 사용법	07
03	저작권 침해와 약관(이용계약) 위반의 차이	08

SECTION 02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

01	저작권 침해 사례	
	사례 1 - 이용제한 표시 없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12
	사례 2 - 직원의 불법적인 글꼴(폰트) 파일 설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	13
	사례 3 - 인쇄용 글꼴(폰트)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	14
	사례 4 - 외주업체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15
	사례 5 - 저작권 침해인 줄 모르고 글꼴(폰트) 파일 설치	16
	사례 6 -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18
02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사례 7 - 인쇄용 글꼴(폰트)를 사용하여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제작	20
	사례 8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폰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21

SECTION 03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

사례 9 - 외주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무단 이용	24
사례 10 - 특정 프로그램이 제공한 번들 글꼴(폰트)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25
사례 11 - 외주제작 업체가 작성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26
사례 12 - 출판된 도서·잡지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전자책 서비스	28
사례 13 - 책 표지·목차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온라인에서 홍보	29
사례 14 - 외주제작 업체가 제작한 기업 상징(CI) 이미지의 활용	30
사례 15 - 글꼴(폰트) 파일 이용 없이 글자체를 본뜬 이미지의 제작·사용	31
사례 16 -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수정해서 사용	32

SECTION 04

기타

기타 1 -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폰트) 확인 방법	36
기타 2 - 불필요한 글꼴(폰트) 삭제·비활성화 방법	37
기타 3 -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38
기타 4 -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폰트)을 이용하는 방법	39
기타 5 - 무료로 사용 가능한 글꼴(폰트)	40

SECTION 01

개요

- 01 글자체(폰트 도안)와 글꼴(폰트) 파일의 차이
- 02 글꼴(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와 올바른 사용법
- 03 저작권 침해와 약관(이용계약) 위반의 차이

【알려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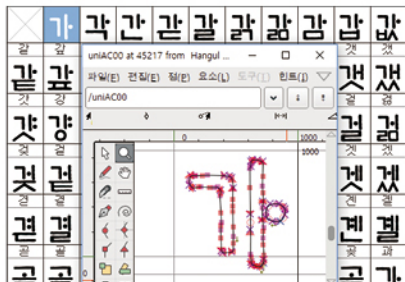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에서는 저작권 관련 법령과 약관(이용계약)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만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이외의 문제인 불법행위(「민법」),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권 침해(「디자인보호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01 | 글자체(폰트 도안)와 글꼴(폰트) 파일의 차이

I 저작물성(「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의 관점에서



【글자체】



【글꼴 파일】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 궁서체, 고딕체, 명조체 등 글자의 모양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예) '궁서체.TTF', '고딕체.OTF' 같은 파일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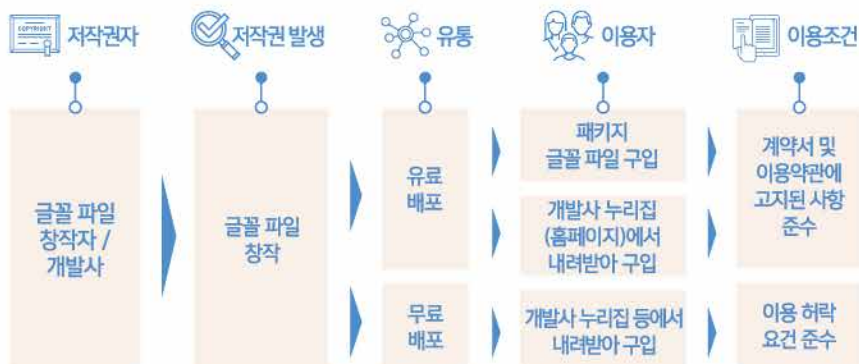
폰트 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중략)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중략)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중략)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02 | 글꼴(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와 올바른 사용법

I 글꼴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



① 유료 글꼴 파일의 설치와 이용

글꼴 파일 이용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글꼴 파일을 구매해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글꼴 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약관(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이용 조건(용도, 목적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전에 약관(이용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무료 글꼴 파일의 설치와 이용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비영리/개인 목적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배포하는 무료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료 글꼴 파일도 저작권자가 사용 조건이나 범위(비영리/개인 목적 사용 가능, 기업 상징 사용 금지 등)를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이용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03 | 저작권 침해와 약관(이용계약) 위반의 차이

구분	저작권재산권 침해(법 위반)	약관(이용계약) 위반
형태	<p>「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저작권재산권*)를 침해하는 경우</p> <p>* 저작권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p>	<p>저작권재산권 침해 이외에 권리자가 정한 사용 범위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p> <p>※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p>
책임	민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사례	<p>사례 1 이용제한 표시 없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 받아 설치</p> <p>사례 2 직원의 불법적인 글꼴 파일 설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p> <p>사례 3 인쇄용 글꼴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p> <p>사례 4 외주업체의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p> <p>사례 5 저작권 침해인 줄 모르고 글꼴 파일 설치</p> <p>사례 6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p>	<p>사례 7 인쇄용 글꼴을 사용하여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제작</p> <p>사례 8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p>



MEMO



SECTION 02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

01 저작권 침해 사례 ①~⑥

02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⑦~⑧

사례 1 이용제한 표시 없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사례 2 직원의 불법적인 글꼴(폰트) 파일 설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3 인쇄용 글꼴(폰트)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

사례 4 외주업체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사례 5 저작권 침해인 줄 모르고 글꼴(폰트) 파일 설치

사례 6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사례 7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하여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제작

사례 8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폰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사례 ①

A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을 검색하여 내려받아 설치하였다. 이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A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별도 이용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꼴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용제한 등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글꼴 파일에는 이를 창작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노력이 담겨 있으므로, 적절한 구매 등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사례 ②

디자인 회사 A의 직원인 B는 특정 글꼴(폰트)을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A 회사에서 해당 글꼴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되고 있는 해당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B 직원뿐만 아니라 A 회사에도 책임이 발생하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한 B 직원에게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A 회사가 B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A 회사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공유되는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므로 B 직원은 저작권 침해(복제권)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41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직원은 처벌되더라도 회사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내에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적극 시행하는 등 회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례 ③

게임 개발자인 A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쇄용'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였다. 이후 게임 개발에도 이 글꼴 파일을 사용하였는데, 게임에서 글꼴 파일이 직접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게임에 글꼴 파일을 포함하여 출시하게 되었는데, A에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가 허락된 방법과 조건(인쇄용)을 넘어 글꼴 파일을 사용(게임 제작)하는 경우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게임 제작에 글꼴 파일을 사용한 것을 넘어 게임과 함께 글꼴 파일을 시디(CD) 등 매체에 담아(복제) 팔거나(배포),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공중송신)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을 이용할 경우 이용의 목적·방법·범위를 사전에 고려하여 글꼴 파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④

A는 외주제작 업체 B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B에서 보내준 캐드(CAD) 설계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글꼴(폰트) 파일이 없어서 글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A는 단순히 설계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글꼴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주제작 업체가 작업한 설계도를 단순히 확인할 목적일지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설치하였다면 저작권(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가 글꼴 파일을 직접 내려받지 않고 B에서 보내준 글꼴 파일을 설치하였다더라도 A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글꼴 파일을 보내준 B 또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⑤

A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과 글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A가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하면 자동차 운전 중 디엠비(DMB) 티브이를 시청하는 행위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률의 착오’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법)법률의 착오

【개념】

자신의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 (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판례】

형법 제16조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해설】

국민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 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행위가 마약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례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와 같이 법률의 착오는 엄격한 사정 하에서만 인정됨.

따라서 허가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놓고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사례 ⑥

A는 비영리/개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지를 꾸미거나 스마트폰 글꼴 변경에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정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일반 저작물과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비영리/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글꼴 파일)의 경우 개인적이고 비영리 목적의 복제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때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에 대한 면책'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누리집(홈페이지)을 만들려고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더라도 이것은 글꼴 파일 전체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에 대한 면책

【일반 저작물 : 「저작권법」 제30조】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02 |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사례 7

A는 인쇄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인쇄용 이외에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광고 영상 제작 등의 용도로도 글꼴 파일을 사용하였다.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의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와 관련하여 자신의 글꼴 파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 방법이나 조건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상의 권리와 관련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넘어선 이용은 저작권 침해 책임 발생)

또한, 글꼴 파일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 권리 외의 이용 방법과 조건(글꼴 파일의 사용 용도, 목적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약관(이용계약)상 사용 방법과 조건을 넘어선 사용은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 발생)

‘인쇄용’으로만 사용 목적이 한정된 글꼴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다른 용도(CI/BI, 광고 영상 제작 등)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권리와 관련이 없는 약관(이용계약)상 사용 방법과 조건 위반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 외에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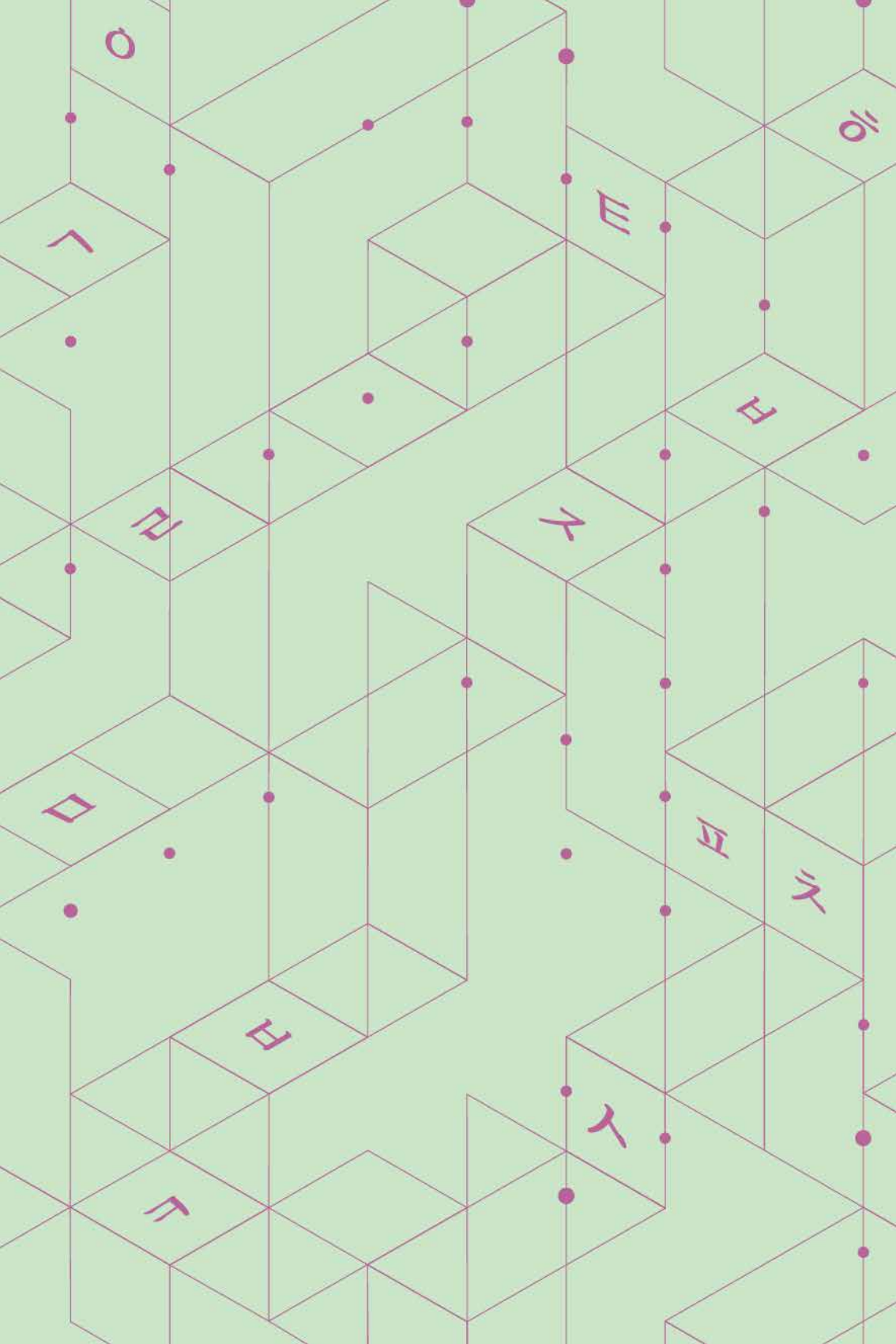
A는 학교 발표 과제를 하려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은 적이 있다. A는 학교 졸업 후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글꼴 파일을 사용하였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의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대부분 무료 글꼴은 개인만이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약관(이용계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 목적인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 파일을 내려받은 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 ⑦ 답변 참조).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 파일이라고 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약관(이용계약)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〇

ノ

ノ

シ

ハ

シ

ク

ロ

エ

フ

入

ノ

SECTION 03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

사례 9~16

사례 9 외주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무단 이용

사례 10 특정 프로그램이 제공한 번들 글꼴(폰트)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사례 11 외주제작 업체가 작성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사례 12 출판된 도서·잡지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전자책 서비스

사례 13 책 표지·목차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온라인에서 홍보

사례 14 외주제작 업체가 제작한 기업 상징(CI)
 이미지의 활용

사례 15 글꼴(폰트) 파일 이용 없이 글자체를 본뜬
 이미지의 제작·사용

사례 16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수정해서 사용

01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

사례 9

A는 웹디자이너 B에게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다. B는 누리집에 삽입할 이미지를 제작하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글꼴(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 글꼴 파일 저작권자가 A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B의 잘못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가?

누리집 제작에 관한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B가 독립적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작업한 경우, A에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외주 제작은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하기 때문에 외주 제작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B에게 있습니다.

즉, A는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 이용하였으므로 글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약관(이용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례 10

A는 'D문서작성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글꼴(폰트) 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글꼴 파일 중 일부가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하였다. 저작권 문제는 없는가?

A에게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이하 'D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글꼴 파일(이하 '번들 글꼴')은 일반적으로 D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할 때 자동으로 윈도우의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설치됩니다.

번들 글꼴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 설치되면 사례에서처럼 D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번들 글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다만,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글꼴 파일이 아닌데도 이용자가 별도 조치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 7) 답변 참조).

사례 11

인쇄업체 A는 B에게서 자료집 편집과 인쇄를 의뢰받았다. A는 인쇄 전 확인용으로 최종 편집본을 피디에프(PDF) 파일로 제공하였고, B는 이 PDF 파일을 본인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자는 게시된 PDF 파일에 글꼴 파일이 무단으로 포함(embedded) 되었으므로 A와 B가 글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인쇄업체가 인쇄용 글꼴만 구입한 경우 A와 B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가?

인쇄업체 A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B에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DF 문서에는 그림, 사진, 글꼴 파일 등이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PDF 문서에 포함된 글꼴 파일은 PDF 문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독립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체가 아닌 일부 글꼴 파일만이 PDF 문서에 포함되므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꼴 파일을 추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나 잠재적인 글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가 자료집을 PDF 문서로 저장하면서 글꼴을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A가 구매한 인쇄용 글꼴의 약관(이용계약)에서 글꼴 파일을 문서 내에 포함하는 경우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면,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글꼴 파일이 포함된 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기만 한 B의 행위는 A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와 달리 글꼴 파일의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주의사항

위 사례는 아직 법원에서 판단된 바 없는 내용으로, 결론이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2

A는 온라인 잡지·서적 유통업자이다. A는 B출판사에서 제작한 잡지를 온라인에서 유통하기로 계약하여 이 잡지를 전부 이미지화한 뒤 온라인에서 서비스하였다. A는 B가 제작한 잡지에 쓰인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글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작된 잡지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글자체만 사용한 A는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을 이용하지 않은 A에게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B출판사의 경우 정당하게 구매한 인쇄용 글꼴 파일을 사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출판·유통하기 위한 잡지를 제작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전자출판 등을 목적으로 글꼴 파일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13

출판업자 A는 인쇄용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책을 출판하였다. 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지와 목차 등 일부를 이미지화 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글꼴 파일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A에게 책임이 발생하는가?

A에게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인 표지나 목차 등을 이미지화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글자체만 사용한 것으로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 14

A는 디자인 업체 B에 회사의 상징물(CI) 제작을 의뢰하였다. A는 B에서 제작한 CI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여 누리집(홈페이지), 홍보물, 간판 등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자는 A가 CI에 사용한 글꼴 파일을 구매하지 않고 누리집 등을 추가로 제작한 것이 글꼴 파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데 타당한 주장인가?

A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누리집, 홍보물, 간판 등을 추가 제작할 때 사용한 것은 글자체가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로,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글자체가 적용되었을 뿐인 이미지 파일을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홍보물·간판 등 제작업체에 보내주는 것은 글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A에게 글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13294 판결>

피고는 서체 도안 ‘쌀’의 이미지파일을 전달받아 쌀박물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전달하였고, 위 시공업체는 위 이미지파일을 이용하여 피고가 운영할 쌀 박물관의 각종 옥외 광고물, 홍보영상물, 기타 인쇄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서체 도안 ‘쌀’의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아 사용한 것일 뿐, 원고가 저작권등록을 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사용하여 위 서체 도안을 제작·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례 15

A는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에 적용된 글자체 중에서 필요한 글자를 고른 후 글자체를 본뜬 이미지를 활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였다. A에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A는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글자체의 글자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글자 모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A에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494, 2012고단1923(병합) 판결>

피고인은 ... 포장지에 사용할 글씨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하던 중 어떤 블로그에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발견하고, 그 글자 이미지를 캡처하여 일종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붙여 넣은 후 그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그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그림 파일을 불러들인 다음 필요한 글자의 외곽선에 점을 찍은 작업(서체 아웃라인 패스 작업)을 거친 다음 그 점들을 이어 선이 생기게 하여 글자를 완성하였다. ... 피고인은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장지에 쓰일 문자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이 프로그램을 '복제'한다거나 '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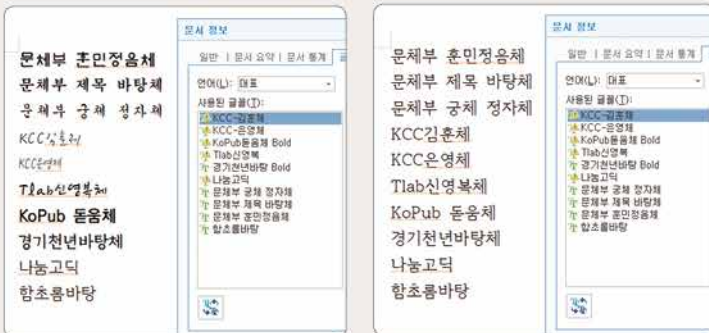
사례 16

A는 B가 작성해 보내준 한글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문서를 완성하였다. A는 이 문서를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글꼴(폰트) 파일의 저작권자가 문서 정보에 표시된 글꼴 파일 목록을 보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A는 해당 글꼴 파일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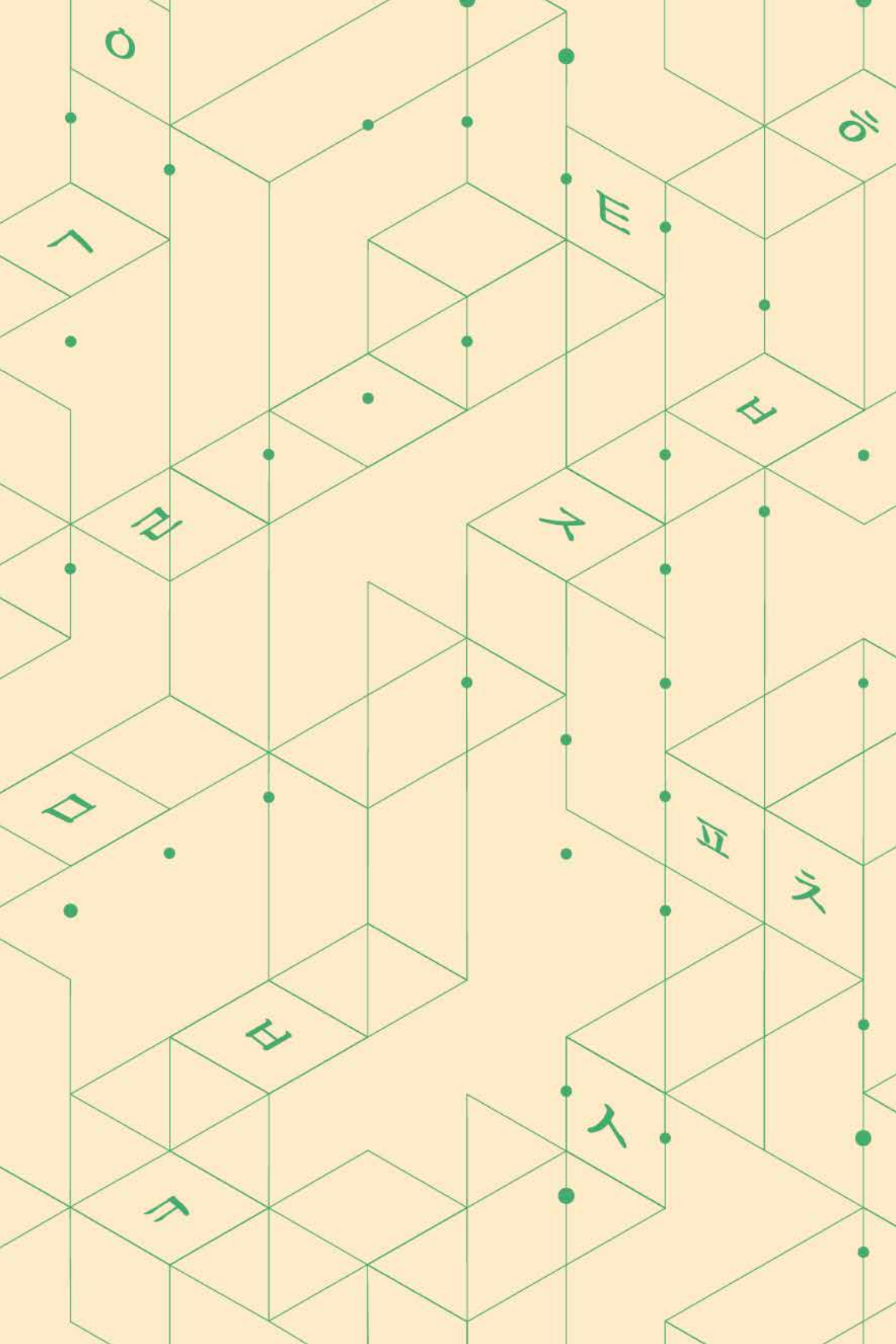
한컴오피스 한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파일]-[문서 정보]-[글꼴 정보] 메뉴에서 문서에 사용된 글꼴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 정보] 메뉴에서는 해당 문서에 사용된 글꼴의 정보를 모두 보여 주므로 만약 문서를 여러 사람이 수정한 경우에는 최종 수정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글꼴 파일도 표시됩니다.



<여러 가지 글꼴 파일이 적용된 원본 문서(왼쪽)와 원본 문서를 수정하여 한 가지 글꼴만 적용한 문서(오른쪽)>

따라서 [글꼴 정보] 메뉴에서 확인되는 글꼴 파일이 문서 작성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해당 글꼴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한 적이 없는 A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04

기타

- 기타 1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폰트) 확인 방법
- 기타 2 불필요한 글꼴(폰트) 삭제 · 비활성화 방법
- 기타 3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 기타 4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폰트)을 이용하는 방법
- 기타 5 무료로 사용 가능한 글꼴(폰트)

기타①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폰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거나 컴퓨터에 글꼴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줄 모르고 이용하더라도 뒤늦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글꼴 파일 등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는 도구인 '인스펙터'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스펙터'를 이용해 컴퓨터를 점검한 결과 구매하지 않았거나 설치 경위를 알지 못하는 글꼴 파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각 이용을 중단하고 컴퓨터에서 삭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스펙터'로는 글꼴 파일뿐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점검 결과가 수집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스펙터 내려받기(한국저작권보호원) <http://kcop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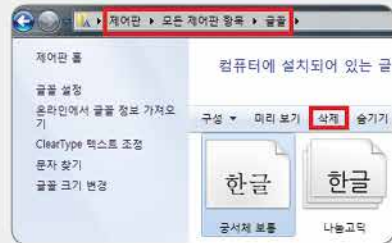
기타②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폰트) 파일을 삭제(윈도우, Windows) 하거나 비활성화(맥 오에스, Mac OS)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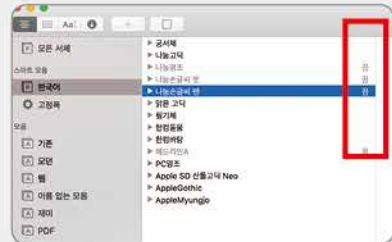
인스펙터 점검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글꼴 파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글꼴 이용을 중단하고 컴퓨터에서 즉시 삭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Windows에서는

[시작]-[제어판]-[글꼴]에서 설치된 글꼴 파일을 직접 확인 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Mac OS를 사용한다면(Mac OS X 기준) [Finder]-[응용프로그램]-[서체관리자]에서 설치된 글꼴 파일을 확인하고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③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등이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에 저작권 불공정 거래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쟁 당사자끼리 원만히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조정 제도(관련 문의 : ☎ 02-2669-0042, 0044)를 이용한다면 저작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4

글꼴(폰트)을 정당하게 이용하고
싶는데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하여 위원회 등록 저작물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관리 저작물의 정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권리자 찾기’ 사이트 (<https://findcopyright.or.kr>)를 운영합니다.

만약 ‘권리자 찾기’ 사이트에서도 저작권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제도’(관련 문의 : ☎ 055-792-0085)를 활용해 이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은 저작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외국 저작물 제외)을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⑤

개인 또는 회사, 단체, 공공기관 등이 상업적 목적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폰트)이 있는가?

글꼴 파일을 잘못 이용하여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체 글꼴 파일을 직접 개발하여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의 글꼴 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복잡한 이용 조건 등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료로 이용 가능한 글꼴 목록(총 93종, 2019. 1. 2.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글꼴(KCC김훈체, KCC박경리체, KCC도담도담체, KCC은영체*)과 저작권을 기증 받은 폰트(Tab신영복체) 등을 무료로 배포하여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황은영씨의 손글씨를 폰트로 제작



※ 공유마당 추천 '무료 폰트 안내' <https://gongu.copyright.or.kr>

(참고) 주의사항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이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약관(이용계약)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MEMO



MEMO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년 1월

디자인 디자인포레버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이와 나눔이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는 올바른 창작활동과 이를 통해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저작물을 나누는 모습을 어른과 어린이 캐릭터로 각각 형상화하였다.